

# 特許行政과 制度發展에 劃期的인 契機



오늘 尊敬하는 黨政策調整室 金重緯 室長님, 商工分科委員會 李聖浩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그리고 發明特許協會, 辨理士會 및 知的的所有權學會 등 工業所有權 關係者 여러분을 모시고 特許行政의 當面課題와 特許法 등 關係法令 整備方案에 대해 協議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서, 이런 機會를 마련해 주신 黨政策調整室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知的的所有權 문제는 兩國間의 通商協商에는 물론, GATT같은 多者間 國際通商機構에서도 重要課題로 論議될 만큼 國際通商의 重要한 問題로 浮上하게 되었습니다.

國內의으로도 知的的所有權 問題는 우리의 技術開發力의 向上과 國內市場 規模 및 貿易 規模의 擴大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知的的所有權에 대한 價値와 그 重要性이 날로 增大되고 있어 企業은 물론 言論 및 國民들의 關心도 날로 高조되고 있음을 實感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工業所有權 行政을 전담하고 있는 저희 特許廳의 責務가 더욱 막중하게 되었으며, 그 機能과 役割도 이에 副應토록 補強되어야 할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工業所有權에 대한 關心의 척도가 되는 出願動向을 보면 過去 5年間 年平均 增加率은 약 12%로서, 다른나라에서는 類例를 볼수 없는 높은 出願增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 上半期는 勞使紛糾의 激化등 企業活動의 低調로 前年同期 對備 6.7% 增加에 그치고 있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最近에는 回復勢에 있으므로 今年에는 總出願 件數가 史上 처음으로 10萬件을 돌파할 展望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日本의 10분의1에 不過한 것이지만 世界的으로는 共產圈을 包含해서 7내지 8位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貿易規模가 世界에서 약 10위권에 進入한 것과 그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特許廳이 當面한 最優先의 課題는 이같은 방대한 工業所有權 出願을 적기에 公正하게 處理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人力의 擴充, 審査官의 資質向上 및 資料檢索의 自動化 내지 電算化를 推進해야 할 시급한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機會에 職員들의 40年間의 宿願事業

인 獨立廳舍新築의 必要性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特許廳이 1949年 商工部 外廳으로서 特許局으로 發足한 이래 14회에 걸친 移舍를 하면서 40年間이나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지금도 個人企業建物에 세를 들어있어 遊興業所, 商街, 辨理士事務所, 個人企業體들과, 같은 建物을 쓰고 있습니다. 官廳으로서 保安이나 品位維持에 어려운 點이 많습니다. “40年間の 세방살이”, 特許行政이 그간 얼마나 소외되어 왔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特許廳은 新技術을 保護하는 行政을 하고 있고, 主機能인 審査·審判行政은 準司法的인 業務이며, 行政對象의 50%는 先進 外國의 企業으로서 國際行政을 遂行하는 官廳입니다.

出願相談, 資料閱覽등 日平均 350여명이 每日 特許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政府의 企業에 대한 規制機能은 自律化的인 進展에 따라 縮小되어야 하겠지만, 特許行政은 企業의 技術開發을 保護하고 助長機能을 遂行하는 것으로서, 技術開發과 開放化를 追求하는 나라는 어느나라나 政府機能중 높은 成長部門에 속하고 있습니다.

工業所有權에 대한 需要는 技術開發과 經濟의 開放化 速度에 比例하여 增加하고 있습니다.

最近에는 尖端技術의 發展과 知的所有權 保護強化의 國際趨勢로, 傳統的인 知的所有權 保護制度 즉, 特許權, 商標權, 著作權등으로는 保護가 적합치않은 새로운 類型의 知的所有權 保護制度가 創出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設計, 데이터 베이스, 營業秘密 등입니다.

이같은 새로운 形態의 知的所有權 保護制度를 우리실정에 맞게 效果的으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知的所有權 保護를 그 主機能으

로 하고 있는 저희 特許廳의 主要課題입니다.

知的所有權은 하나의 財産權이지만 有體的인 形態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比較的 自由롭게 國境을 넘나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知的所有權은 國際的 保護를 그 本質로 하고 있습니다.

知的所有權 問題가 國際通商의 必須的인 課題가 된 것은 知的所有權 保護의 國際性 때문입니다.

따라서, 知的所有權 制度는 國際化 趨勢에 민감히 對應하지 않으면 안되며, 國內的으로 是 技術開發 水準에 副應내지는 先導的인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制度가 整備補完되어야 하겠습니다.

現行 特許法, 商標法등 工業所有權 關係法令은 1940年 내지 1960年代에 制定된 이래 그때 그때 部分的인 改正은 있었으나, 그간 엄청나게 變化된 우리의 國內外的 經濟環境에 副應하여 綜合的으로 整備할 機會가 없었습니다.

特許行政의 現代化 作業의 一環으로 工業所有權 法令의 全面改正案을 마련하였습니다.

關聯業界와 特許廳 共同으로 作業班을 構成하여 1年余 作業을 하였고, 그간 數次에 걸쳐 業界와의 協議會를 가졌으며, 2次에 걸친 公聽會 結果를 參酌하고, 지난 7月25일 마감한 立法豫告를 거쳐 改正案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特許廳의 當面課題 解決과 法令整備案에 많은 助言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이 모임이 特許行政과 制度發展에 劃期的인 契機가 될 수 있도록 많은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9. 8. 4

特許廳長 朴弘植